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046호

나. 제 안 자 : 박순규 의원(찬성의원 27명)

다. 발의일자 : 2022년 01월 21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01월 25일

2. 제안이유

- 용역이라는 단어가 단순 노동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쓰이면서 업계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 을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변경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 을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변경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전문적·복합적인 건설기술 서비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괄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관계법령 개정사항

- 그동안 “건설기술용역”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통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단순한 노무 제공의 “용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향하는 건설기술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특히 건설기술이 설계·감리·측량·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용역”이란 표현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를 전달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2021.3.16.)해 “건설기술 용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¹⁾과 같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 하였음.

1) “엔지니어링활동”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 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및 사업관리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건설기술용역 용어 개정 현황>

개정대상	개정내용
건설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용역업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계약	건설엔지니어링계약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용역비	건설엔지니어링사업비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 기술용역” 용어가 사용된 조례 3개를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변경 하였음.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개정 대상>

조문	조례명	정비조문	현 행	정비내용
제2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제3호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5항제2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4조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9호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 노동·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여겨왔던 “용역” 에서 탈피해 복잡·다양한 건설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설기술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혜미	2180-8057